국제우편물류센터 공고 제2020-5호

2020년 제3회 공무직근로자(우정실무원)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

국제우편물류센터 공무직근로자(우정실무원)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

응시번호	국제-01	국제-02	국제-03	국제-04
	국제-06	국제-07	국제-08	국제-09
	국제-10	국제-11	국제-12	국제-13
	국제-14	국제-15	국제-16	국제-17
	국제-18	국제-19	국제-20	국제-21

2. 면접일시 및 장소

구분	시험일시	시험장소	대기장소	비고
면접시험	2020.9.18.(금) 14:30~	국제우편물류센터 2층 소회의실	국제우편물류센터 2층 지원과	

※ 대상자는 **응시표와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을 지참**하고, 아래와 같이 정해진 **면접시험 시작 전까지** 대기장소에 입실 완료하여야 함
(우편접수 응시자 등 응시표 미수령자의 응시표는 면접일 당일 배부)

※ **코로나19로 인해 면접 입실 시간을 나누어 진행함**
(국제-01번부터 11번까지는 14:10까지, 국제-12번부터 21번까지는 15:30까지 입실 완료)

※ **면접시험 시작 후 입실불가**

※ **응시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시기 바랍니다.**

※ **면접시험 시간 중 외부인과의 접촉이 금지되며, 시험 종료 후에는 대기하는 응시자와도 접촉할 수 없음**

2.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

○ 코로나19 확진자, 접촉자(격리대상자)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○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응시자는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모든 응시자는 마스크 착용, 시험장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소독 및 체온 측정 후 입실이 가능합니다.

- 시험실 입실 전 발열체크 후 고열(37.5℃ 이상), 기침,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의 경우, 별도의 대기실에서 대기 후 응시
- 예방 수칙을 따르지 않는 응시자는 입실이 불가합니다.

○ 최근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, 발열 또는 기침·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나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이 나타난 응시자는 면접시험 전일까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tel : 032-745-9804)

- 모든 응사지는 '붙임1'의 '문진표'를 사전 작성하여, 면접장소 입장 시에 진행요원에게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. (미 제출시 입장 불가)

○ 기타 문의사항은 국제우편물류센터 지원과(tel : 032-745-980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9월 15일

국 제 우 편 물 류 센 터 장

(붙임1)

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응시자 사전 문진표

□ **아래 내용을 읽고 해당사항이 있으면 [○] 표시하시기 바랍니다**

1. 9.1.~9.17. 기간 중 본인, 가족, 지인에 대한 해외방문 또는 접촉 이력 확인

1-1. 본인 또는 동거중인 가족이 해외방문 이력이 있다. 예 [ ] 아니오 [ ]

1-2. 해외방문 이력이 있는 친구 또는 지인을 만난 적이 있다. 예 [ ] 아니오 [ ]

2. 9.1.~9.17. 기간 중 확진자 또는 격리자와 접촉한 적이 있다. 예 [ ] 아니오 [ ]

3. 9.17. 기준 아래의 증세가 있다.(해당항목 V 체크)

□ 발열(37.5℃) □ 기침(인후통) □ 근육통(몸살) □ 호흡곤란 □ 가래 □ 설사

4. 9.1.~9.17. 기간 중 확진자가 다녀간 기관에 방문한 적이 있다. 예 [ ] 아니오 [ ]

* 1~2 항목에 해당하는 분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'20.9.18.(금)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실시하는 우정실무원 면접시험에 응시가 불가능하오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

□ **위의 내용에 대해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.**

응 시 번 호 :

응시자 성명 : (인)

*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3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닉·은폐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* 형법 제137조에 따라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들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